#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조정훈·김미애·최수진

김대식 • 인요한 • 김용태

유상범 • 정성국 • 박준태

서명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 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 기관 설립·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

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 우기관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 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
	영자 등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u>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u>
	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
	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
	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
	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
	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
	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의 학
	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
	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
	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

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